



논산을 새롭게  
시민을 행복하게

의안번호

제26호

논산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논 산 시 장
제출연월일	2026. 2. 9.



# 논산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26호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6. 2. 9.

제 출 자 : 논 산 시 장

제안설명자 : 교 통 과 장

## 1. 제안이유

- 무료개방 주차장 지원금이 공시지가를 면적 기준 환산한 금액의 1%에 불과해, 주차장 소유자와 협의가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고자 지원금을 상향하여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무료개방 주차장 지원금 비율 상향 조정(안 제4조)
- 나. 지원 신청 조문 정비(안 제5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 참조
- 나. 예산조치 : 붙임 비용추계서 참조
- 다. 기타사항
  - 1) 부패영향평가 : 원안 동의[기획감사실-669(2026. 1. 13.)호]
  - 2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[복지정책과-2270(2026. 1. 14.)호]
  - 3) 규제심사 : 규제심사 대상 아님[예산실-481(2026. 1. 12.)호]
  - 4) 입법예고
    - 가) 예고기간: 2026. 1. 8. ~ 2026. 1. 28. (20일 이상)
    - 나) 예고결과: 의견 없음
  - 5) 비용추계서 : 붙임 참조
  - 6) 충청남도 소관실과 : 충청남도 교통정책과

□ 개정조례안

논산시 조례 제 호

논산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논산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 제목“(지원대상 및 지원금)”을“(지원금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제3조의 조건을 만족하는 시설로,”를 “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주차장에 대하여”로, “면적당”을 “면적 기준”으로, “1%”를 “100분의 2.5”로, “지급”을 “예산의 범위에서 지급”으로 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지원 신청)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주차장의 관리주체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성 명
입	교 통 과 장	조 용 근
안	교 통 시 설 팀 장	이 성 철
자	담 당 자	박 성 호 (746-6257)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지원대상 및 지원금) <u>논산 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제3조의 조건을 만족하는 시설로, 무료개방 주차장의 공시지가를 면적당으로 환산한 금액의 1%를 연간 사용료(이하 “지원금”이라 한다)로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4조(지원금) ----- ----- <u>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주차장에 대하여 -----</u> <u>--- 면적 기준-----</u> <u>100분의 2.5-----</u> ----- <u>예산의 범위에서 지급-----</u> --.</p>
<p>제5조(지원사업 신청) <u>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주차장의 관리주체는 시장에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5조(지원 신청) <u>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주차장의 관리주체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.</u></p>

**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**

- 무료개방 주차장 지원금을 2.5%로 변경함으로 인한 비용 발생
- 논산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제4조(지원대상 및 지원금)

**2. 비용 추계결과**

**가. 추계의 전제**

- 평일 무료개방, 하루 12시간 개방, 개방면적 2,767m<sup>2</sup>
- 1차년도 개별공시지가 145,100원으로 시작하여, 매년 2.5%씩 상승

**나. 추계 결과**

- 1차년도(2026년): 세출 15,820천원
  - 2차년도(2027년): 세출 16,340천원
  - 3차년도(2028년): 세출 16,680천원
  - 4차년도(2029년): 세출 17,170천원
  - 5차년도(2030년): 세출 17,600천원
- = 5년간 합계: 총 83,610천원

**3. 작성자**

**교통과장 조 용 근**

### <연도별 증가비용 추계표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1차년도 (2026년)	2차년도 (2027년)	3차년도 (2028년)	4차년도 (2029년)	5차년도 (2030년)	계
세 입	15,820	16,340	16,680	17,170	17,600	83,610
시 비	15,820	16,340	16,680	17,170	17,600	83,610
세 출	15,820	16,340	16,680	17,170	17,600	83,610
일반보전금 (기타보상금)	15,820	16,340	16,680	17,170	17,600	83,610
재원 조달	15,820	16,340	16,680	17,170	17,600	83,610
의존 재원	소 계					
	보 조 금					
	지방교부세					
자체 수입	소 계	15,820	16,340	16,680	17,170	83,610
	지방세	15,820	16,340	16,680	17,170	83,610
	세외수입					
지방채						
기 금						
공기업 특별회계						
기 타 (채무부담, 민자 등)						

## □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

제14조(사용료)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(時價)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(評定價格)의 연 1천분의 10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월할(月割) 또는 일할(日割)로 계산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르며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.

## □ 「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

제28조(대부료의 요율)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,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.

1. 공용·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